



코로나19 대응 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안내



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

-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% 이하 (4인 기준 3,657,218원)
- 재산기준은 3억원 이하 (금융재산 및 부채 제외)

대상자 제외

- 2021. 3. 1일 기준 동거인, 주민등록주소자, 사망자, 거주불명자, 외국인, 재외국민 등
- 기존 복지대상자 : 5월 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
-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 :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, 버팀목플러스자금, 소득안정지원금

지원금액 : 가구당 현금 50만원 1회 계좌이체 지급

신청방법

① 세대주 본인 온라인 신청

- ▶ 신청기간 : '21. 5. 10.(월) ~ 5. 28.(금)
- 복지로(<http://bokjiro.go.kr/>) 또는 모바일 접속 (m.bokjiro.go.kr) → 휴대폰 본인 인증 → 로그인

②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
- ▶ 신청기간 : 2021. 5. 17.(월) 09:00 ~ 6. 4.(금) 18:00
- ▶ 신청인 : 세대주, 동일세대 내 가구원, 대리인 등

※읍면 행정복지센터 안내

읍 면	전화번호	읍 면	전화번호
남해읍	☎ 055-860-8014	남 면	☎ 055-860-8263
이동면	☎ 055-860-8063	서 면	☎ 055-860-8314
상주면	☎ 055-860-8113	고현면	☎ 055-860-8363
삼동면	☎ 055-860-8161	설천면	☎ 055-860-8413
미조면	☎ 055-860-8213	창선면	☎ 055-860-8463

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통장, 소득감소 증빙자료

소득감소 증빙자료 예시

- 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거래명세서, 통장거래내역서, 소득금액증명원, 신용카드 매출 확인서, 휴폐업신고서, 통장사본 등
- 피해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 지원,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

※ 단, 소규모농가 지원(30만원) 대상자는 차액분에 한해서 지원가능하며, 생계위기 대학생지원도 지원가능

기타 문의 :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TF팀 055-860-3809